

## 【 5 】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8. 11. .

제출자 : 양주시장

### □ 제안이유

- 우리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 연계기능 조성에 필요한 각급기관 대학교, 연구소, 문화시설 등 전략시설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으로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면제조항을 일부개정하여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여건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 주요골자

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조항 신설 “공공업무시설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대학교(대학), 종합병원, 문화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또는 공공목적으로 투자하는 시설), 기타 전략유치시설(산업단지내 입주시설 제외)】에 한하여 면제(안 제4조제1항제4호)

양주시 조례 제       호

##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업무시설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대학교(대학), 종합병원, 문화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또는 공공목적으로 투자하는 시설), 기타 전략유치시설(산업단지내 입주시설 제외)】에 한하여 면제한다.

[별표1] 제3항 제2호 나목 “수돗물 소요량 산정기준 및 금액 산출방법” 서식중 “업무시설군” 내용을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협약체결된 사항은 기존조례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원인이 발생하고 협약체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u></p> <p>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생략) 2.(생략) 3.(생략) <u>(신설)</u></p>	<p><u>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u></p> <p>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 ----- -----</p> <p>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 공공업무시설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대학교(대학), 종합병원, 문화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또는 공공목적으로 투자하는 시설), 기타 전략 유치시설(산업단지내 입주시설 제외)】에 한하여 면제한다.</p>																																																						
(별표 1)	(별표 1)																																																						
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및 금액 산출방법	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및 금액 산출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시설유형별</th><th style="text-align: left;">급수추정량(L/일)</th><th style="text-align: left;">산출방법</th></tr> </thead> <tbody> <tr> <td>주거시설군</td><td>(생략)</td><td>(생략)</td></tr> <tr> <td>숙박시설군</td><td>(생략)</td><td>(생략)</td></tr> <tr> <td>교육연구, 복지시설군</td><td>(생략)</td><td>(생략)</td></tr> <tr> <td>공장시설군</td><td>(생략)</td><td>(생략)</td></tr> <tr> <td>의료시설군</td><td>(생략)</td><td>(생략)</td></tr> <tr> <td>판매, 유통, 영업시설군</td><td>(생략)</td><td>(생략)</td></tr> <tr> <td>기타시설군</td><td>(생략)</td><td>(생략)</td></tr> <tr> <td>업무시설군</td><td>공공업무시설은 제외한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td><td></td></tr> </tbody> </table>	시설유형별	급수추정량(L/일)	산출방법	주거시설군	(생략)	(생략)	숙박시설군	(생략)	(생략)	교육연구, 복지시설군	(생략)	(생략)	공장시설군	(생략)	(생략)	의료시설군	(생략)	(생략)	판매, 유통, 영업시설군	(생략)	(생략)	기타시설군	(생략)	(생략)	업무시설군	공공업무시설은 제외한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시설유형별</th><th style="text-align: left;">급수추정량(L/일)</th><th style="text-align: left;">산출방법</th></tr> </thead> <tbody> <tr> <td>주거시설군</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숙박시설군</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교육연구, 복지시설군</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공장시설군</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의료시설군</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판매, 유통, 영업시설군</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기타시설군</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업무시설군</td><td>(삭제)</td><td></td></tr> </tbody> </table>	시설유형별	급수추정량(L/일)	산출방법	주거시설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숙박시설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육연구, 복지시설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장시설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시설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판매, 유통, 영업시설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타시설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업무시설군	(삭제)	
시설유형별	급수추정량(L/일)	산출방법																																																					
주거시설군	(생략)	(생략)																																																					
숙박시설군	(생략)	(생략)																																																					
교육연구, 복지시설군	(생략)	(생략)																																																					
공장시설군	(생략)	(생략)																																																					
의료시설군	(생략)	(생략)																																																					
판매, 유통, 영업시설군	(생략)	(생략)																																																					
기타시설군	(생략)	(생략)																																																					
업무시설군	공공업무시설은 제외한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시설유형별	급수추정량(L/일)	산출방법																																																					
주거시설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숙박시설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육연구, 복지시설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장시설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의료시설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판매, 유통, 영업시설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타시설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업무시설군	(삭제)																																																						